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가단25569(본소), 2019가단5142551(반소) 판결
[청구이의의 소 · 매매대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 종결 2020. 4. 3.

판결 선고 2020. 5.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0.자 2019차전23688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399,45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20. 5. 2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독촉절차비용 59,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2020. 5. 2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이 법원이 2019카정21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6.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0.자 2019차전23688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740,000원과 그 중 1,320,000원에 대하여 2018. 9. 19.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결혼상담 및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그 명의로 결혼중개계약이
체결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어머니 D은 2018. 9. 15.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代"로 표시하고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회원가입비를 660만 원으로 정하여 "플래티넘" 등급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갑'은피고를,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피고의 신용카드로 회원가입비 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서비스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 : 을은 갑에게 3개월(2018년 9월 15일 ~ 2018년 12월 14일)의 기간 동안 이성

과의 만남 서비스를 횡수 제한 없이 제공합니다. (환불 가능한 기간)

3. 계약해지 시 회원가입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환급합니다.

※ 사업자(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

비 + 회원가입비의 2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기간제) 회원가입비×(잔여일수/총일수) + 회원가입비의 20%

6. 특약사항 약정규약횟수 2회 미팅 이후 환불 불가

다. 원고는 2018. 11. D과 연락하여 피고가 만날 상대방을 소개하고 만남 일자를 약속하였으나, 피고측 사정으로 2차례에 걸쳐 만남 직전에 만남이 취소되었고, 이에 원고와 D은 1회 만남을 진행한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2019.1. 5. 및 2019. 2. 3. 서로 다른 상대방을 만났다.

라. 피고는 2019. 4. 19. 원고에게 피고가 가입한 등급에 맞지 않는 상대방을 주선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탈회를 요청하였다. 이어 피고는 2019. 4. 25. 원고를 상대로 이법원 2019차전236886호로 이 사건 계약이 대리권 없는 자의 계약이었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하거나 신의성실을 위반한 불공정계약이었음을 이유로 이를 철회하고 회원가입비 66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9. 4. 30. '원고는 피고에게 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59,3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19. 5. 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9. 5.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므로 피고는 해지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고,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③ 이 사건 계약의 서비스 기간이 경과하였고 2회 이상 만남을 주선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환불 관련 특약 사항, 서비스 기간 등 무효인 조항으로 구성된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기간 3개월 동안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만난 상대방도 플래티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를 해지하고 회원가입비 66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피고 모르게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표시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D은 이 사건 계약의 회원가입비를 피고의 신용카드로 할부로 결제한 사실, 피고는 늦어도 2019. 1. 30.경에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안 사실, 그 후 피고는 2019. 2. 3. 원고가 소개한 상대방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대리권 없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미치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2)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플래티넘 등급으로 체결되었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 로 660만 원의 회원가입비를 지급한 사실, 플래티넘 등급은 원고가 운영하는 결혼중개회원등급 중 2번째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납부하여야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가입하면 원고는 재력가 · 전문직 위주의 매칭을 제공하기로 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2018. 11. 최초로 소개하여 만남을 갖기로 약속까지 하였다가 피고측

사정으로 취소된 상대방의 경우에는 플래티넘 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피고가 원고의 소개로 2019.1. 5. 및 2019. 2. 3. 만난 상대방들은 플래티넘 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이 사건 계약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와 책임 없는 사유 모두에 대하여 약정해지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서비스 기간은 2019. 10. 24.까지로볼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플래티넘 등급)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9. 4. 19. 피고의 탈회 요청에 따른 약정해지권 행사에 따라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환불 불가 사유에 해당 여부

(가) 환불 가능한 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서비스 기간에 대하여 '횟수제'가아닌 일정 기간 동안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횟수의 제한 없이 제공하는 '기간제'로정하면서 "을은 갑에게 3개월(2018년 9월 15.일 ~ 2018년 12월 14.일)의 기간 동안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횟수의 제한 없이 제공합니다.(환불 가능한 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이 2018. 9.15.임에도 서류정리 문제로 2018. 10. 25.부터 피고에 대한 소개 업무를 개시한 사실,원고는 D에게 1년 동안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측에서도 2018. 12. 14.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소개를 받고 2회 만남에까지 이른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데,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서비스 기간은 2018. 10. 25.부터 2019. 10. 24.까지 1년으로 정하여졌다고 볼 수 있고, 환불 가능한 기간 또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이전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환불 가능한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 제6조 특약 사항 적용 여부

이 사건 계약 제6조에서 특약 사항으로 "약정규약횟수 2회 미팅 이후 환불 불가"라고 정하였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위 특약 사항은 그 내용과 기재 방법 및경위에 비추어 원고와 D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계약의 내용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횟수의 제한 없이 제공하는 기간제를 포함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 특히 기간제 가입에서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1회 만남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환급 기준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까지 위 특약 사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그뿐만 아니라 위 특약 사항에서 정한 "미팅"이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상대방을 소개하여 만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상대방을 소개하여 2회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에 위 특약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회원가입비의 환급 범위

이 사건 계약은 2019. 4. 19.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었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11.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대방을 소개하고 만남 일자까지 약속하였으나 피고측 사정으로 2차례 만남이 취소되어 원고와 D이 이를 1차례 만남을 진행한 것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계약 제3조에서 예정한 1회 만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조에서 정한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 시 환급기준에 따라 잔여일수 188일(2019. 4. 20.부터 2019. 10. 24.까지)에 대하여 회원가입비 중 3,399,452원(=6,600,000원 × 188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그 밖에 원고는 회원가입비의 20%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피고가 반소에서 별도로 구하고 있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회원가입비 환급금 3,399,4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399,45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 다음날인 2019. 5.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 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범위 안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59,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여야 한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위약금 132만 원 청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었고, 이 사건계약에서 이러한 경우 회원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 13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342만 원 청구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귀책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송을 하게 하는 등 원고의 불법행위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며 매일을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전적 산출이 어렵지만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원고의 위법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대응하느라 소비된 피고의 휴식권을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342만 원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회원가입비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원가입비 중 일부는 피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그 반환의무 발생 및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다툼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회원가입비 환불을 거부한 것이 위법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 1,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7.

3.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 다.

판사 고흥석